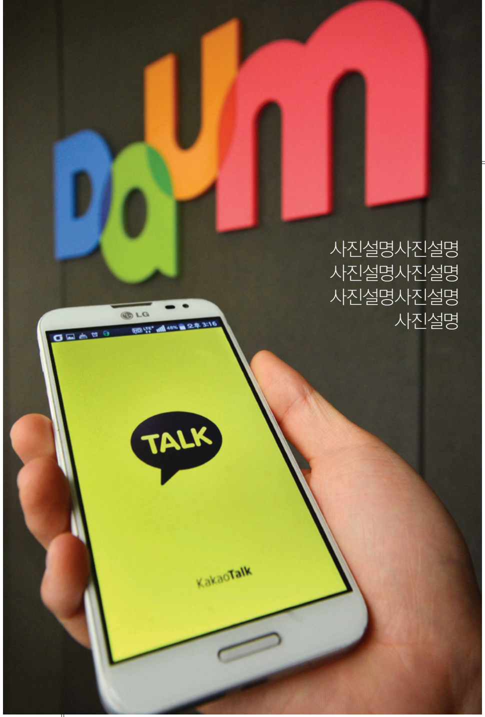

사진설명사진설명
사진설명사진설명
사진설명사진설명
사진설명

기업결합 심사와 동의의결제

시장 지배력 남용 규제, 시장과 기술발전에 발맞춰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해 3월 안경렌즈 국내 1위 업체인 에실로(Essilor)의 대명광학 인수를 불허했다. 대명광학이 지난 수년간 가격경쟁을 주도하여 렌즈가격을 안정화시켜 왔는데 에실로가 대명광학을 인수하면 렌즈가격의 인상, 끼워팔기 등 시장지배력 남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무학의 대선주조 인수,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 롯데호텔의 파라다이스 면세점 인수 등에 대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불허한 바 있다.

주식인수, 합병 등의 기업결합은 비용절감·시장확장 등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으나, 독과점 형성·경제력 집중 등의 폐해도 야기할 수 있다. 공정위는 경쟁이 감소해 가격상승, 생산량 감축, 품질저하, 혁신이나 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을 불허하거나 자산매각·가격인상 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기업결합 심사는 본질적으로 해당 기업결합이 장래에 시장구조와 경쟁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작업이다. 시장상황의 변동 추이는 물론이고, 현실적이거나 잠재적인 경쟁사업자·고객 등의 반응도 예측해야 한다. 관련 시장의 변화가 예측된다면 그런 변화도 기업결합 심사의 전제가 된다.

이베이의 G마켓 인수의 경우는 양사의 오픈 마켓에서의 점유율은 87.5% 수준이었으나 다른 인터넷쇼핑몰과 오프라인 유통채널로부터 경쟁 압력이 존재하고 향후 신규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기업결합이 승인된 바 있다.

지난해 공정위는 총 585건에 달하는 기업결합 건을 심사했다. 제한된 심사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시장경쟁과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이 큰 사안을 선별해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공정위는 소규모 회사의 계열회사 간의 합병,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기업인수 목적을 위한 회사의 설립,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 미만의 임원 겸임 등은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신고 건수를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불허나 시정조치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동의의결제'를 활용할 수 있다. 즉, 기업결합의 당사는 경쟁제한이 우려될 때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동의의결을 확정하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노키아를 인수하기 위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해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다. 동의의결제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절차의 불확실성을 우려해 활용도는 낮지만 사례가 누적되면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결합의 심사 시 관련시장(상품시장·지리적시장)을 너무 좁게 설정하면 시장집중도가 높아져 경쟁제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관련시장의 확정 단계에서 논란이 발생하기 쉽다. 관련시장의 확정이나 시장집중도를 검토하지 않고도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시장을 확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위해 과다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최근 통신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플랫폼 사업은 온·오프라인을 연결하거나, 공유경제(shared economy) 개념에 기초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가치를 창출하고 시장이 다면적 구조여서 기존의 시장 확정 방법을 적용하기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경쟁당국도 시장과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시장구조의 효율성, 경쟁의 보호, 시장지배력 남용규제 등 각 상황에 맞는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J

송창현 서울대 법대 졸업, 미국 컬럼비아대 법과대학원 석사(L.L.M.), 미국 UC버클리 법과대학원 법학박사(J.S.D.), 사법연수원 제26기 수료,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M&A·기업소송·정부규제)